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 신설〉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11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23.
3. 회부연월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장기·반복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 타당성 검토 등이 주요 기능입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행정기관의 판단이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둘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 생략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부 처분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원제도의 취지와 처리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만 근거를 둔 현행 구조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규범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u><신설></u>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령에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또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¹⁾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민원

- 1)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의 권리 구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 민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제34조제1항제1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4조제1항제2호),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4호에 따른 재심의(제34조제1항제3호) 등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음.

이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원인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에 관한 규정이 하위 법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기본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로 상향·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 보호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첫째,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안 제3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법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과 충돌 우려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유의 판단을 부여하게 된다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안 제34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안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기관은”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339